보라매병원 사건 그 후

글 · **송성철**
의협신보 기자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기 마련이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와 기구도 존재한다. 행정부, 입법부과 더불어 국가를 이끌어 가는 3대 기구로 사법부가 손꼽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근대 법제 하에서 사법부를 대표하는 것은 법원이며, 법원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판결·결정·명령 등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도맡고 있다.

소위 재판으로 축약되는 법률행위의 생명은 무엇보다 공정성을 꼽을 수 있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면 무엇보다 우수한 법관의 확보가 관건. 편견에 빠지지 않고 엄정한 마음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불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법관이라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다.

솔로몬의 지혜가 없는가?

동서고금을 통틀어 현명한 재판을 꼽으라면 단연 솔로몬 왕의 재판일 것이다.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는 두 여인. 솔로몬 왕은 고민 끝에 호위병에게 칼을 가져올 것을 명령했다.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 그 칼로 아이를 정확히 둘로 나누어 주거라."

그러자 한 여인은 "어서 왕의 말대로 하세요. 그것이 공평합니다"라고 말했고, 다른 여인은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라며 울먹였다.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여성 특유의 모성애를 이용해 아이의 진짜 어머니를 가려내는 기지를 발휘했던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다면 유전자감식방법을 동원해 누가 친어머니인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겠지만 사회가 발달하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분쟁의 형태도

갈수록 증가하고,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법제도도 사회의 발전에 발맞춰 절대권력에서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발전을 거듭한 끝에 현재와 같은 틀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잘잘못을 가려내고 분쟁을 중재하는 사법제도 본래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으며, 사법제도에서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법관의 중요성이나 자질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근 의료계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원의 몇몇 판결을 지켜보면서 법원이나 법관의 중요성에 대해 뼈저리게 절감할 수 있었다. 아울러 고도의 전문성이 개입된 사건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으며,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판결이 180도 달라질 수 있음에 경악해야 했다.

환자 퇴원 허락… 살인방조(?)

의료계를 경악케 한 판결은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졌다. 환자보호자의 강력한 퇴원요구에 따라 환자 진료를 중단하고 퇴원시켜준 의사에게 [살인죄]라는 유죄 판결을 내린 소위 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살인방조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 아직 상고심이 남아있어 최종 판결을 지켜보아야 하지만 보라매병원사건은 보호자의 퇴원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의료현장에서의 관행적인 의료행위가 살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는 퇴원 문제로 한 동안 홍역을 치러야 했다.

"객사(客死)는 피해야 한다"며 "집에서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지켜야 한다"는 보호자측과 "살인죄를 뒤집어 쓸 수 는 없다"는 의료진의 이해가 맞서 관할 법원에 전화가 쇄도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에서는 각 의료기관 단위별로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생명윤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의사윤리지침이 새롭게 제정되기도 했다.

보라매병원사건은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인 한계는 물론이거니와 보호자의 퇴원 요구를 수용해온 오랜 관행조차 감안하지 않은 채 의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사의 권리 의무' 법 적용 앞서 존중 마땅

의료계가 이 점에 주목하는 이유는 보라매병원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보호자의 강력한 퇴원요구 앞에 의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관행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중한 의무만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는 것이 보라매병원사건을 바라보는 의료계와 몇몇 법학자들의 시각이다. '생명존중'이라는 심정적이고 윤리적인 울타리에까지 법적인 요구를 확대한 것은 "같은 것은 같게, 같지 않은 것은 같게"라는 법 정신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2심 판결에서는 [살인죄]에서 [살인방조죄]로 법 적용이 일부 조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보라

매병원사건은 의료계나 법조계에 첨예한 관심사로 다시 등장했다. 향후 안락사·존엄사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의료계로서는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보라매병원사건에 깊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병원 곳곳에서 의료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맞닥뜨려야 했고 앞으로도 마주해야 하는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 안락사, 의료분쟁조정법 등등 현실과 법적인 경계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내부적인 개선방안도 스스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전체 의료계가 관심을 쏟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평생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 살 것을 다짐했던 두 젊은 의사의 서약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의무는 열 식구를 다 책임져야 하는 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상고심이 끝나기 전에 탄원서라도 한 장 써서 보내는 작은 노력이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 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